

# 위치찾기 선진화제도 도입으로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장

## 1. 위치찾기 선진화 추진배경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 이제 꼭 1년 남았다. 이는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도입되면서, 100년 만에 바뀌는 주소체계에 국민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소 사용 환경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가지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중 첫 번째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주민등록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에는 주소 전환이 완료되어 행정기관 업무에 적용되



<그림 1> NHN과 업무협약(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현장 이벤트(우)

고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나 지방세 고지서 등도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 주소로 정착시키고자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공동주택 승강기 안내스티커 부착(38만 건), 지방세·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고지서를 활용한 안내(5,500만 건), 지하철·거리에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NHN(4.13), KT(5.8), 대한지적공사(9.19), 지식경제부(한국전력, 가스공사 포함, 9.25) 등 공공·민간분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정보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도록 추진하였다.

K-POP스타 박지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동영상을 비롯한 포스터, 홍보책자 등에 활용하여 새롭게 정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제도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을 개발·보급하고 인터넷 포털 기능도 개선하였다. 나아가,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장에서 도로명주소로 엽서 보내기 캠페인 등을 통해 단순 인지도 제고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다.

다른 하나는 도로명주소를 보완한 위치찾기 선진화제도의 추진이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인구 약 2배, 우편물량 약 8배, 자동차 350배, 외국인 방문객 수

520배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이뤄왔다. 또한 2012년 상반기까지 스마트폰 사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신 IT 기술의 변화가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치를 보다 편리하게 찾기 위해 도로명주소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보완한 「위치찾기 선진화 제도」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점’과 ‘선’ 중심의 도로명주소에서 나아가 ‘면’ 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관할 구역을 표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기초구역 제도<sup>1)</sup>, 산악·해양 등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 구조를 용이하게 하고 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 제도<sup>2)</sup>,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여 우편물 수취를 편리하게 하고, 건물내부에서도 위치찾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세주소 제도가 그것이다. 도로명주소와 위치찾기 선진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면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치찾기 선진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위치찾기 선진화 제도 주요내용

### 1) 상세주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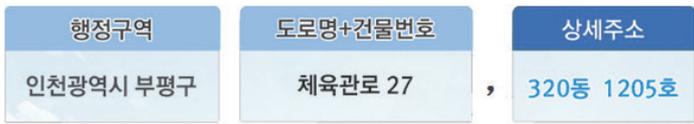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 등의 동 번호, 호수 또는 층수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 동, 층, 호의 위치를 알려주는

1) 국가기초구역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함(도로명주소법§2②)  
 2) 국가지점번호 :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 포함)를 말함(도로명주소법§2③)

**[ 국민생활 편의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그림 2〉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행정안전부)



〈그림 3〉 도로명주소의 표기(상세주소 포함)



〈그림 4〉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 표기

표기이다.

지금까지 상세주소는 공동주택 등에 한정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동·층·호는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거주자들은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곤란하여 생

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도 동·층·호를 표기하는 방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sup>3)</sup> 제각각으로 표기함에 따라 위치 찾기에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상세주소 제도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고 공동주택 등의 상세주소 표기를 정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주소의 부여절차는 소유자·임차인<sup>4)</sup>의 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현황, 임대차관계, 임차인의 동의 등을 확인하는 기초조사 과정

3) 가동·101호·A동 101호/1동 1001호·101동 1001호/ 지하 101호·지층 1호·B01호 등  
4)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

을 거쳐 건물현황에 맞도록 부여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소유자·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부여 결과를 통지 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2) 국가기초구역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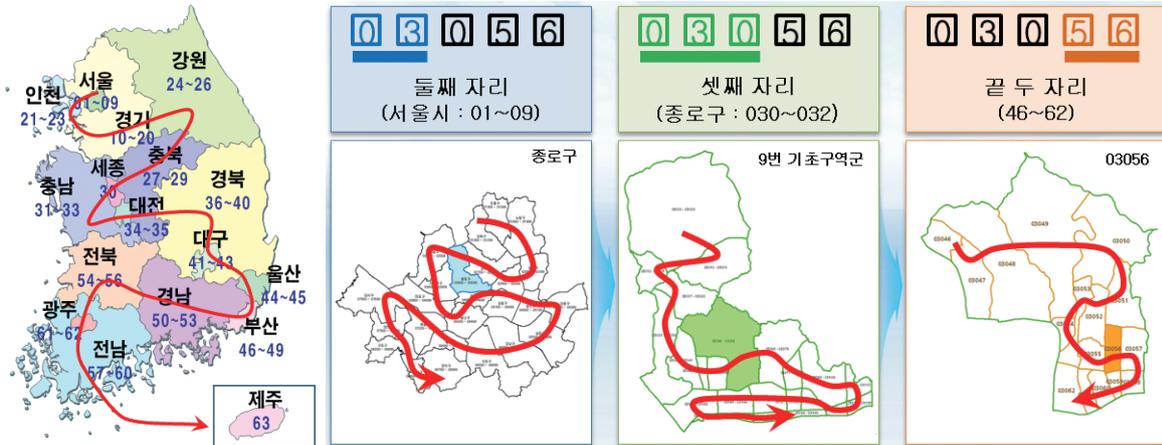
기초구역이란 통계·우편 등 일반에 공표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로, 선(線)중심의 도로명 주소에 면(面)개념의 기초구역을 보완해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하고, 각종 관할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표준화하여 기초행정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있다.

기초구역은 철도,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과 행정경계, 인구, 건물분포,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보다 작게 5~10개 정도의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sup>5)</sup>하게 되고 각각의 기초구역마다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구역번호라 한다.

구역번호는 기초구역에 시·도(2자리) + 시·군·구(3자리) 방식의 5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게 되며, 10만 개의 번호자원 중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3만 개, 남한 7만 개 번호자원을 할당하고 이를 서울(01~09)부터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제주(63)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한, 도시의 팽창과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비해 중앙과 시·도, 시·군·구에는 예비구역번호<sup>6)</sup>를 남겨두었으며, 구역번호 중 아라비아 숫자 '4'가 연속하여 4개가 있는 경우('4444') 국민이 기피하는 숫자로 보아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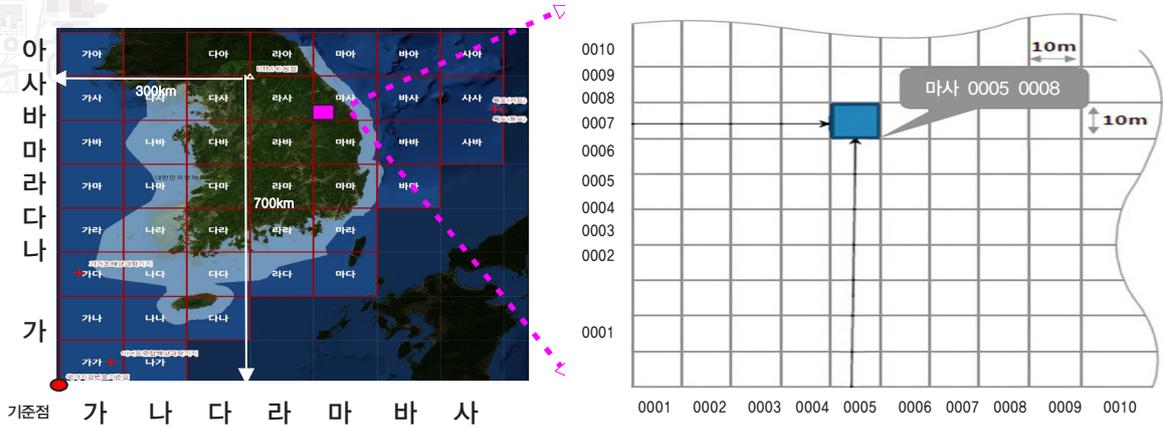
이렇게 설정한 기초구역은 2012년 12월 전국 동시 고시를 거쳐 2013년도부터 관계기관에서 시범운영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2014년도부터 우편, 물류, 택배를 비롯한 각종 구역의 기본 인프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림 5> 구역번호 부여 예시(03056, 서울특별시 종로구)

5)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주민 등 열람공고와 시·군·구,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에서 2012년 12월 전국에서 동시 고시

6) 중앙에 10%, 시·도에 20%, 시·군·구에 33% 정도의 예비구역번호를 남겨두어 도시의 팽창과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비



〈그림 6〉 지점번호 기준점 부여(안)

### 3) 국가지점번호제도

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田)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100km 단위로 나누어 문자를 사용하고, 하나의 격자 내에서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000으로 나눈 정수를 연결하여 사용<sup>7)</sup>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여된 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산악, 해양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안내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하여 대국민 서비스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III. 맺음말

이상과 같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제도 도입

으로 공공 및 민간의 사회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2013년에는 자기 주소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을 바탕으로 어린이·청년층·주부 등 연령과 분야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고, 주된 사용자인 우편·택배·공인중개사 등에게 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상세주소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원하는 국민에게 부여하는 한편, 제도시행을 모르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 안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은 관계 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기관에서 기초구역을 구역인프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가지점번호의 경우 지점번호판 설치지역 고시, 긴급

7)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 지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동쪽과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부여(예 : 마0005(가로), 사0008(세로) → 마바00050008)

구조용 앱 개발 등 2013년도에도 추진할 일이 많은 분야이다.

위치찾기 선진화 제도는 도로명주소의 기능을 보완하여 기초행정 선진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된다면 도로명주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생활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정착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생활수칙으로 삼아 생활해 주기를 희망한다.

#### 첫째, 내 주소 바로 알기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소를 바로 확인하고 기억하자.

#### 둘째, 내 주소 바로 쓰기

편지를 쓰고 받을 때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하자.

#### 셋째, 새 주소로 바꾸기

은행, 카드, 보험, 동창회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자.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http://www.ktmoving.com))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다. 📍